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2008. 4. 18 (금) 14:30

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#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출자 : 민경환 의원 외 6인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4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4월 11일

## 3. 제안 이유

- 도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된 대학·연구기관·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이용정보 제공확대 및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내 대학·연구기관·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도내 대학·연구기관·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충청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함(안 제1조).
- 나.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등을 늘리고 체계화하여 적극 활용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.

다. 도지사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.

라. 연구개발장비 활용 주관기관 지정(안 제5조)

- 1)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기관 또는 단체를 주관기관으로 지정
- 2) 주관기관은 충북공동장비 데이터베이스 구축, 지역장비 활용방안 수립,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

마.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6조).

바.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 협의회 구성 및 운영(안 제8조)

- 1) 협의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2) 위원장은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주관기관의 공동장비 사업 총괄책임자로 함
- 3) 협의회의 기능은 주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,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되어 대학·연구기관·공공기관 등이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시설과 연구장비를 도내 중소기업의 R&D 강화,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장비에 대한 이용정보의 제공, 접근성 개선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  
- 다만,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도내 중소기업의 R&D 활동강화, 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장비의 수요조사 및 지원 계획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등 조례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